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3 – 0075호

공공연구성과 가치창출 기술키움(사전기획, 기술키움) 2023년도 신규과제 공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'공공연구성과 가치창출 기술키움' 사업의 2023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01월 20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이 종 호

【 (요약) 신규과제 공고 개요 】

세부사업명	내역사업명	총연구기간 단계별 연구기간	당해 연구기간	당해 지원규모
공공연구성과 가치창출 기술키움	사전기획	'23.3.~'23.6. '23.3.~'23.6.	'23.3.~'23.6. (3개월)	32.5백만원 (3개월 분)
	기술키움	'23.7.~'26.6. '23.7.~'25.6.(1단계) '25.7.~'26.6.(2단계)	'23.7.~'23.12. (6개월)	900백만원 (6개월 분)

목 차

1. 사업개요 ····· 1

2. 2023년 신규과제 지원계획 ····· 2

3. 공고과제 개요 ····· 2

4.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····· 6

5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····· 10

6. 신청기간 및 신청시 유의사항 ····· 12

7. 선정기준 및 절차 ····· 14

8. 기타사항 ····· 17

9. 향후일정(안) ····· 18

10. 적용법령 및 규칙 ····· 18

11. 문의절차 및 문의처 ····· 19

[참고1] 공공연구성과 가치창출 기술키움 사업 세부내용 ····· 21

[참고2] '23년도 사업 추진 일정(안) ····· 24

[참고3] 사업 FAQ ····· 25

1 사업개요

□ (**목적**) 기초·원천 기술을 다양한 기술분야로 분화*(연쇄파생)하는 기술 실용화 종합지원을 통해 기업이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키움 추진

* OSMU(One Source Multi Use) : Seed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동시 기술실용화

※ 참고. OSMU형 기술키움 요건

▪ 기초·원천기술 중 다수 분야로 파생 가능하지만, 시장수요에 맞게 추가개발 및 타 기술과의 융합이 필요한 경우

- 현재 응용분야가 명확하지 않은 기초·원천 기술 중 3~4년 내에 기업이 원하는 수준까지 추가연구(기술키움)를 통해 기술이전 및 실용화가 가능한 경우.

□ (**지원개요**) 응용분야 발굴 및 컨소시엄 구성 등 사전타당성 검증을 위한 '사전기획' 절차를 거쳐 기술이전·검증 후속 R&D 등을 지원하는 '기술키움' 과제지원

○ **(사전기획)** 기술보유자・중개연구자(대학/출연연)・수요기업・TLO 등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기획부터 실용화까지 사전기획 및 사전 타당성 검증(Feasibility Study) 추진

○ **(기술키움)** (1단계) 수요기업의 요구수준에 부합 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주도로 기술키움 종합 지원 → (2단계) 성숙된 기술을 이전받아 기업 주도로 시제품 신뢰성 평가, 시장 런칭 등 상용화 추진

< '23년도 사업 단계별 지원 개요 >

구분	사전기획 ('23.3.~'23.6, 3개월)	기술키움	
		1단계('23.7.~'25.6, 2년)	**2단계**('25.7.~'26.6, 1년)
추진 목표	▸ **기술키움 지원 타당성 사전 검증**	▸ **연구자 주도로 수요기업 Needs 기반 후속 R&D 추진**	▸ **수요기업 주도의 기술상용화 추진**
목표 (산출물)	▸ **기술키움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및 BM 개발**	▸ **시험·검증 및 실험실 시제품 제작 등**	▸ **시험·인증·표준 등 시장에 출시를 위한 제품 개발 등**
지원 과제수	▸ **4개 과제**	▸ **2개 과제**	▸ **2개 과제**
정부지분 지원*	▸ **과제당 0.325억원 / 1년**	▸ **과제당** 18**억원 / 1년** ('23년 9억원/6개월) * 수요기업 참여(민간지분 매칭 없음)	▸ **과제당** 18**억원 / 1년** * 수요기업 참여(민간지분 매칭)
비고		▸ 사전기획 수행과제 중 50%만 기술키움 지원(2:1 경쟁)	

※ 지원예산(정부지분)과 과제규모(과제수)는 예산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가능

2 2023년 신규과제 지원계획

□ **(일정)** 1회('23년 1월) 공고

□ **(사업설명회)** 사업내용 소개, 신규과제 지원계획 공유, 사업 참여를 위한 방법·절차·규정 안내 등

※ 장소, 세부일정, 방식등은 추후 안내 예정

3 공고과제 개요(지원내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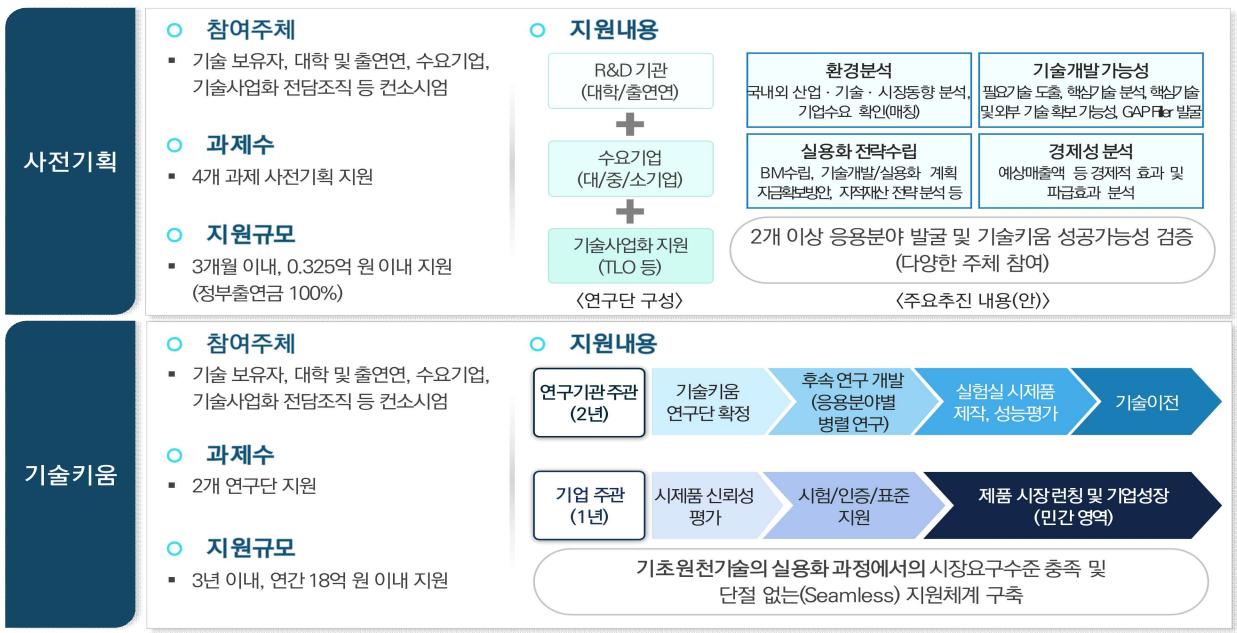
□ 지원내용

○ **(지원 개요)** '사전기획' 4개 과제 및 '기술키움' 2개 과제

내역사업명	총 연구기간	1단계 연구기간	2단계 연구기간	당해년도 연구기간	당해 지원규모
사전기획	'23.3.~'23.6. (3개월)	'23.3.~'23.6. (3개월)	-	'23.3.~'23.6. (3개월)	0.325억원 (3개월 분)
기술키움	'23.7.~'26.6. (3년)	'23.7.~'25.6. (2년)	'25.7.~'26.6. (1년)	'23.7.~'23.12. (6개월)	9억원 (6개월 분)

※ 기술키움 2단계(기업주관) 추진 시 연구과제 및 시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기간 연장 신청 시 0.5년 이내에서 연장 검토(단, 사업비 증액 없음)

< 공공연구성과 가치창출 기술키움 사업 구조 >



○ **(지원대상)**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관한 법률」제14조(특정연구개발사업의추진)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또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2조 제3호(연구개발기관) 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※ 단, 사전기획 및 1단계 주관기관은 공공연구성과를 보유한 비영리 기관에 한하며, TLO등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을 보유하지 못한 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※ 민간 '기업'은 기술키움 1단계 주관기관(세부주관)으로 참여 불가.(단, 수요기업은 위탁연구 가능)

○ **(지원내용)** 연구자·중개자·기업 3자가 일체화 되어 기초·원천 기술을 다양한 기술분야로 분화(연쇄파생) 하는 기술실용화 추진

- 기초·원천 기술(TRL 3~4)을 후속R&D·시제품 제작·시험/인증·기술이전 등 기술실용화 종합지원을 통해 기업이 활용 가능한 수준(TRL7~8)으로 기술키움 추진

○ **('23년 신규과제 지원기간)** (사전기획) 3개월
(기술키움) 1단계 2년 + 2단계 1년

- **(총 과제 수행기간)** '23.3～6월, '23.7월～'26.6월(총 3년 3개월)

- **(당해년도 과제 수행기간)** '23.3～6월, '23.7～12월(9개월, 사전기획+본과제)

- **(단계별·연차별 과제 수행기간)**

기간	'23.3. ~ 6.	'23.7.~ 12.	'24.1 ~12.	'25.1. ~ 6.	'25.7. ~12.	'26.1. ~6.
단계 연차	사전기획	기술키움 1단계 1년차	1단계 2년차	1단계 3년차	2단계 1년차	2단계 2년차

※ 단계 평가 : '25.6월 / 최종 평가 : '26.7월

※ 2단계 : '25.7월 ~ '26.6월(12개월), 사업기간 연장 요청 시 사업비 증액 없이 0.5년 이내 연장 가능

□ 세부 지원내용

가. 사전기획

○ **(지원내용)** OSMU型 기술실용화 추진이 가능한 기초·원천 우수연구성과 선정을 위한 실용화 전략 수립 등 사전 타당성 검증

- 응용분야 발굴 및 목표시장 설정, 컨소시엄 구성(수요기업 매칭) 등

- 기술-제품 포트폴리오 구축, 후속R&D 전략 및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실용화 성공 가능성 사전 검증

○ **(주관기관)** 대학·출연(연)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총괄연구기관 역할 수행

- 공고기간 중 연구단 구성을 완료한 이후 지원 혹은 사전기획 선정 이후 기술키움 연구단(수요기업 포함) 구성 가능

※ 단, 총괄주관기관의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은 필수 참여 / 구성계획 제출 필수

나. 기술키움

○ **(지원내용)** 사전기획이 우수한 과제(경쟁형 2:1)에 대해 수요기업(시장)의 요구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술키움(기술성숙) 종합*지원

* 기술이전・검증, 후속 R&D(기술성숙), 시제품 제작, 시험・인증 등

- 후속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연구는 대학·출연연 등 기술 보유기관 중심으로 추진(1단계), 수요기업 기술이전 후 상용화 연구는 기업주관으로 진행(2단계)

○ **(주관기관)** 1단계는 연구기관(대학·출연연 등)에서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고, 2단계에서는 수요기업 주도로 주관기관 역할 수행

○ **(연구단 구성)** 세부과제별 기술실용화 총괄지원이 가능한 주관기관 및 관련 분야 기초·원천기술 보유기관(연구자), 중개연구 기관(연구자), 수요기업,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등으로 구성

- 2개 이상의 세부과제*, 1개의 기술실용화 지원과제**로 구성

* 2개 이상의 응용분야(목표시장) 기술실용화가 가능하도록 세부과제를 구성하되, 총괄주관기관(총괄책임자)도 1개의 세부과제 수행 가능

** 총괄주관기관의 TLO 중심으로 지원과제를 구성하여 기술실용화 지원(세부과제 소속기관 TLO 참여 가능)

○ 수요기업은 각각의 세부과제(목표시장)와 매칭하여 참여하되, 1단계는 연구비 지급은 해당 없으며 2단계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

※ 단, 필요 시 위탁연구 참여 가능

○ 연구단 구성 시, 원천기술 활용에 대해 총괄연구기관과 세부과제(중개연구기관) 간의 '공동 기술이용 확약서' 체결 및 '수요기업 기술이전 관련 확약서' 제출**(필수)**

○ 기술키움 연구단 세부과제별 동일 예산 배분이 아닌, 기술개발 정도·시장특성, TLO 활동내용 등을 고려한 **자유로운* 예산배분 추진**

* 연구단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예산 자율 배분(총괄주관연구기관)

※ 사전기획 시(연구개발계획 수립) 세부과제별 예산 차등배분 가능(단, 연구개발 및 기술실용화 계획 등에 따른 세부과제별 소요예산)

< 참고. 사전기획 주요 내용>

구분		지원 내용
환경 분석	기술동향 분석	- 국내외 산업・기술・시장동향 분석
	기업수요 확인	- 응용분야 발굴 및 수요기업 발굴/매칭
추가 기술 개발/ 실용화 전략 수립	BM 수립	- 응용분야별 BM 수립
	기술개발 계획	- 세부 기술개발 전략(기술개발 목표 및 결과물), 참여기관별 역할분담 및 보유역량,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등
	실용화 계획	- 국내외 시장분석, 목표시장 타겟팅, 수요처 발굴 및 마케팅 전략/계획 수립, 사업화 추진전략/계획 수립
	자금확보 방안	- 개발자금 확보 계획(외부 자금+ 추가 투자계획+민간 투자유치 가능성 등)
	지적재산 전략분석	- 지적재산 확보 전략, 보유 지적재산의 보강 전략, 지적 재산권 방어 전략 등
	연구단 운영계획	- 기술키움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단 내 역할분담
경제성 및 파급효과		- 예상 매출액 등 경제적 성과

4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

□ 연구개발기관의 기본 자격

○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특정연구개발사업의추진)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

○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

○ 본 사업수행 지원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과제

○ 단, 수요기업의 경우, 1단계 연구기간은 참여, 2단계 연구기간은 민간부담금 부담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하며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(대학 실험실창업 기업, 연구원 창업기업, 연구소기업,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도 포함)

혁신법 제2조(정의) 3. "연구개발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·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바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사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

시행령 제2조(연구개발기관) 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아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2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
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

1. 주관연구개발기관: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2. 공동연구개발기관: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3. 위탁연구개발기관: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(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
※ (해외기관) 원칙적으로 참여불가. 단,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함
1. (주관/참여) 국내에 법인이 있거나 상법상 회사로 인정되는 경우
2. 국제공동연구는 참여 불가

○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 제15조 제2항

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이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,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□ 사전기획 과제 연구비 활용 제한

○ 3개월 단기의 타당성 검증과제로 **'인건비', '간접비' 사용 불가**

※ 연구활동비로만 사용(연구개발서비스기업 활용, 회의비, 출장비 등)

□ 사전기획 종료 시 '공동기술이용 확약서' 및 '수요기업별 기술이전 확약서 제출 (필수)

○ **(공동기술이용 확약서)** 원천기술을 활용하는 세부과제별로 수요기업이 원하는 연구 추진을 위한 '원천기술 공동이용' 조건 협의

※ 세부과제 주관기관(대학, 출연연 등)이 수요기업이 원하는 기술키움 연구 수행을 위해 원천기술 활용 및 향후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 권리관계와 관련된 협의사항(기술료 배분, 지분문제 등) 세부내용 작성

○ **(수요기업 기술이전 확약서)** 총괄주관기관 원천기술, 세부과제별 지식재산권(중개연구자 보유특허, 노하우 등), 기술키움 연구결과물 등과 관련된 '기술이전 확약서' 제출(필수)

- 총괄주관기관과의 '공동기술이용 확약서'상에 협의된 원천기술의 수요기업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
- 원천기술과 결합되는 세부과제 지식재산권(특허, 노하우 등)의 수요기업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
- 기술키움 연구수행을 통해 개발된 후속 지식재산권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

※ 기술이전 확약 세부사항은 '공동기술이용 확약'에 기반하여 수요기업과 협의된 사항을 자율 기재하되, 수요기업 요구기준·기술이전 시기·기술료 등을 포함

□ 연구책임자의 자격

○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특정연구개발사업의추진)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

○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

○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

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
2.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
3.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
4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·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5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·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6. 연구개발성과 창출·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
7.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
2.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, 그 경제적·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
3.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

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(이하 "연구책임자"라 한다)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
- ㅇ 기술키움 연구단장(총괄책임자)은 다수 응용분야로 파급 가능한(OSMU) 기초·원천기술 보유자 이면서, 세부과제의 실용화를 총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
- ㅇ 단, 기업의 경우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
- ㅇ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(정년)퇴직,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,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

□ 신청제한 사항

- ㅇ **(참여제한 중인 자)**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(기관)는 신청할 수 없음 단,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(기관)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
- ㅇ **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*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 제한

혁신법 제35조(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

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

※ '사전기획 과제'는 3책 5공 제외 과제이고, '기술키움 과제'는 기 수행중인 과제 연구종료 시점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

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
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-105호, 2021.1.1., 일부개정)

제4조(참여연구원 기준) ① 영 제2조제2항가목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보고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(이하 "참여연구원"이라 한다)는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.

② 영 제2조제2항나목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.

③ 영 제2조제2항다목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자로 보지 아니한다.

○ **(인건비 계상률)**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**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%*를 초과**하여 신청할 수 없음

* 정부출연(연)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%

※ 인건비 계상률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전 참여율과 유사 용어

○ **(중복 신청 제한)** 연구책임자(주관/공동/위탁)는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

-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, 중복 신청 과제가 공동/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도 상위 주관(단위)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에서 제외

○ **(유사과제 신청 제한)** 기존에 유사 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,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(타부처 포함)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

-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가능

※ 유사과제 검색 방법 : www.ntis.go.kr 로그인 → 과제참여 → 유사과제 → 유사성검토

○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(대표자) 또는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는 경우

※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일 경우 교육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지원제외 대상

○ 총괄 주관기관에서 사업화 전담조직이 미참여한 과제

○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

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이 운영하는 IRIS*(https://www.iris.go.kr)를 통해 과제신청, 평가 및 관리 업무를 진행합니다.

* IRIS(Integrated R&D Information System):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

○ **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https://www.iris.go.kr)**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		접수			
연구(책임)자가 NRI 가입,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·갱신 (학력, 경력 등)	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 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	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	⇨	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 · 승인	⇨ 연구과제 **신청완료**
1 연구자	**2 주관연구기관**	**연구책임자**		**주관연구기관장**	

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
▸**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은 해당 시스템 운영 기관에 문의)**

[관련 문의(IRIS 문의처)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]

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, 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
1 **(연구자)**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정보 등록 필수

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
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
※ **① 및 ②**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, **③**: 연구책임자만 필수

2 **(주관연구기관)**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**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**

〈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〉 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

- **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〈00대학교 산학협력단〉이 아닌, 〈00대학교〉로 신청요망**
- **〈00대학교〉의 기관정보(기관대표자 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,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) 등록 필수**
- **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(00대학교)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**

※ 현재 〈00대학교 산학협력단〉으로만 기관정보(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)가 등록되어 있고,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〈00대학교〉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〈00대학교 산학협력단〉으로도 신청가능

□ 제출서류 :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 각 1부

□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

○ 신규접수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

12개월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	계획서 분량	
	주관(舊단위) 과제	공동/위탁과제
연 5억원 미만(해당)	30P(해당)	15P(해당)
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	해당없음	해당없음
연 20억원 이상	해당없음	

※ 제한 분량 미준수시 평가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6 신청기간 및 신청시 유의사항

□ 신청기간

※ 공고일: 2023. 1. 20(금) ~ 2.24(금) / 35일(공고일 제외)

구 분	내 용
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(신청마감일)	2023. 2. 13 ~ 2. 24. 18:00 까지
주관연구기관 검토 · 승인기간	2022. 2. 13 ~ 2. 24. 14:00 까지
신청 절차	주관연구책임자 접수 ▷ 주관연구기관 승인 ▷ 신청 완료

※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,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

- **연구책임자**: [연구책임자 신청 기간] 내에 계획서 등록(신청완료)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**연구수행기관**: [연구수행기관 검토·승인 기간]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(단,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·승인 가능함)
- **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**며,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(유효성검증 오류 등)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과제제안요구서별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재공고함
- 연구데이터 관리계획(DMP, Data Management Plan) 등 필수작성 붙임 및 별첨 미작성, 미제출 시 평가 제외(요건탈락)
-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, 제출서류 미비,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,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
-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
- 평가위원회·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, 과제 구성, 연구비,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
- 중간점검·평가(단계) 결과 및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구목표 및 내용 조정, 연구비 증감, 지원중단, 조기종료 등 가능

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(단,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)

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,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(선정 취소 등) 가능

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

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, 별도 공지 예정

ㅇ **(해당시)** 3천만원~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

※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'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회'별도 심의 신청 필수

※ 계획서 상 '연구시설·장비 구축·운영 계획'에 관련 내용 명시

ㅇ **(해당시)**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19조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

7 선정기준 및 절차

□ 기본방향

○ OSMU 가능성, 사업추진 역량의 우수성, 실용화 계획의 우수성, OSMU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과제 선정

○ (필요시) 제출서류에 대한 전문가 서면평가 후 발표평가 추진

- 필요시,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규모의 2배수 내외의 발표평가 후보과제 선정 가능

○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코로나 19 확산 및 위기경보 단계 발령에 따라 비대면 평가(화상평가, 온라인 서면평가)로 대체할 수 있음(해당시 별도 공지 예정)

○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함

○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
□ **평가방법** :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(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)

※ 평가대상 과제규모, 연구주제 등에 따라 분야별, 주제별 평가위원회 구성 가능

※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

□ 평가절차

①사전검토	②서면평가 (필요시)	③발표평가	④전문기관 검토 및 사업추진위 심의	⑤최종선정 및 이의신청
응모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절성 검토.보완	평가위원별 연구계획서 검토	위원별 개별평가 (과제별 평가점수 부여)	평가결과 심의 및 조정/보고	평가결과 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
과학기술사업화 진흥원	**평가위원회**	**평가위원회**	**과학기술사업화 진흥원/ 과기정통부**	**과학기술사업화 진흥원**

○ **(사전검토)*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11조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·단체·연구자가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신청자격을 구비했는지 확인

혁신법 제10조(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·단체·연구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시행령 제11조(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검토) 법 제10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·단체·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/ 2.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

○ **(전문가 평가)** 서면평가(필요시) → 발표평가, 위원별로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개별평가

※ 과제별 최종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점수 중에 최고점과 최저점을 1개씩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도출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)

□ '사전기획' 선정평가 지표(안)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
원천기술의 우수성 (OSMU 가능성)	• 2개 이상의 응용분야로 파생 가능성 • 기초·원천연구성과의 기술적 우수성	30
사업추진 역량 우수성	• 주관기관 연구개발 역량 - 기관의지, 인력구성 적절성, 인프라 우수성 • 연구책임자의 우수성(연구역량)	20
연구계획의 우수성	• 컨소시엄 구성(구성계획)의 우수성 • 응용분야별 기술키움을 위한 연구개발 개발계획의 적절성	20
기술실용화 계획의 우수성	• 기술실용화 계획의 구체성(응용분야별) • 기술 실용화 시 예상 파급효과의 우수성 • 외부 환경변화 대응 및 주요정책 방향 부합성 (정부투자 집중분야 등)	30
합 계		**100**

※ 단, 평가지표 및 배점은 변경 가능

□ '사전기획' 최종평가 및 '기술키움' 선정평가 지표(안)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
원천기술의 우수성 (OSMU 가능성)	• 2개 이상의 응용분야로 파생 가능성 • 기초·원천연구성과의 기술적 우수성	25
사업추진 역량 우수성	• 주관기관 연구개발 역량 - 기관의지, 인력구성 적절성, 인프라 우수성 • 연구책임자의 우수성(연구역량)	15
연구계획의 우수성	• 사전기획을 통해 수립된, 세부과제별 기술키움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	20
기술실용화 계획의 우수성	• 기술실용화 계획의 구체성(응용분야별) 및 실현 가능성 • 컨소시엄 내 참여주체별 협력 계획의 우수성 •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지원계획 우수성(차별성)	25
OSMU 파급효과	• 응용분야별 기술실용화 실현 시,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기대효과 우수성	15
합 계		**100**

※ 단, 평가지표 및 배점은 변경 가능

※ 동점과제의 경우,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(OSMU 가능성 → 실용화 계획의 우수성, 연구계획 우수성 → OSMU 파급효과 → 사업추진 역량 우수성)

□ 과제별 성과목표·지표 설정

○ 성과목표·지표 설정시 개별 과제별 성과목표·지표 이외에 본 사업 성과목표·지표도 추가하여 목표 설정

< 공공공연구성과 가치창출 기술키움 사업 성과지표 >

성과지표	'23년 목표	산출근거	측정방법
R&D 투입대비 기술이전 계약액 (단위: %, 누적)	1.9%	국내 평균 R&D생산성 수준 준용	(기술이전 계약액 /R&D 투입금액) x 100%

□ 성과관리

○ NTIS, IRIS 기반 성과관리

- 사업점검 및 평가시 NTIS 및 IRIS에 입력된 연구성과만을 반영

※ NTIS 및 IRIS에 입력되지 않는 성과(예, 인프라 구축, 시작품·시제품 제작, 표준·인증, scale up, 수요기업 요구사항 반영)는 관련 증빙 및 수요기업(대표) 의사 확인 등을 통해 성과 반영·인정 예정

○ 성과 기여율 및 사사(Acknowledgement)

- (기여율) 최소 30%이상 반영, 최대 3개 사업의 공동 성과 인정

- (사사, Acknowledgement) 각 성과별 지원 사업(사사) 표기

['공공연구성과 가치창출 기술키움' 사업 사사(acknowledgement)]
이 성과는 정부(과학기술정보통신부)의 재원으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(「공공연구성과가치창출기술키움」사업, *No. NTIS 과제번호*).

□ 중복성 검토

○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, www.ntis.go.kr)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실시

- 전문기관은 접수과제를 전수 조사하여 유사도 70점 이상 과제를 중복성 및 차별성 검토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 상신

-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된 과제로 판명될 시 선정 제외

※ 관련 규정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

8 기타사항

□ **(전담인력 지정)** 원활한 사업·성과관리를 위해 기술적 대응이 가능한 참여연구원 중 1명 이상을 전담인력으로 필수 지정

※ 해당 인력의 연락처를 연구계획서 1페이지(실무담당자)에 추가하여야 함

□ **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**

○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(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, 데이터,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)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

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(시행 2022.1.1.)
제8조(연구노트의 작성)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.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(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)는 개인사업자,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, 사전조사·기획평가, 연구개발과제의 조정·관리, 인문·사회분야, 인력양성,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(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)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.
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,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·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,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**(단위/세부 기준 연 3억원 이상 과제 연구책임자) 향후 사업 기획·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참여 및 협조 권장**

□ **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안내사항**

○ 연차·단계·최종보고서 제출 의무 준수

※ 관련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

*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)

○ 단계 및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변경, 연구개발비의 증액 및 감액할 수 있음

※ 관련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~17조

○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

※ 관련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

9 향후일정(안)

일정	내용
2023.2.13(월) ~ 2.24(금) 18시	연구계획서 접수(신청 마감일)
2023.2.13(월) ~ 2.24(금) 14시	주관연구기관 검토·승인기간
2023.3.2. 내외	서면평가 실시
2023.3.8. 내외	발표평가 실시
2023.3.10. 내외	사업 추진위원회 심의
2023.3.19.	이의신청 접수 마감
2023.3.20.	협약체결 및 연구개시

※ 상기 일정은 향후 변동될 수 있음

10 적용법령 및 규칙

○ 본 공고, 사업,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『과학기술기본법』, 『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』, 『국가연구개발혁신법』, 『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』, 『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』, 행정규칙 『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』, 시행계획 『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』, 『2023년도 공공연구성과 가치창출 기술키움 사업 시행계획』을 적용

11 문의절차 및 문의처

□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

○ 공고내용 수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사업공고,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사업공고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확인 필수

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(https://msit.go.kr/)

- 홈페이지 접속 → 소식 → 사업공고

○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www.compa.re.kr/)

- 홈페이지 접속 → 알림마당 → 사업공고

□ 관련 법령, 규칙 등 조회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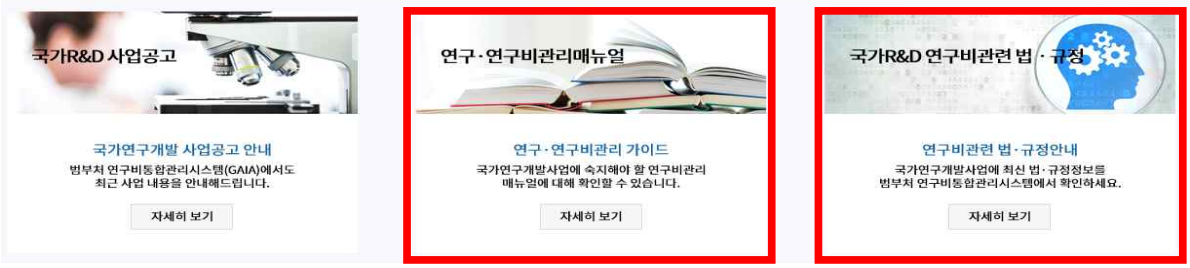
○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http://gaia.go.kr) 접속

○ 법, 규정, 규칙 확인

- 「국가R&D연구비관련 법·규정」 클릭 → '공통 법·규정'탭과 '과학기술정보통신부' 탭의 '과학기술정보통신부(한국연구재단)' 관련 사항 확인

○ 연구·연구비 관리 매뉴얼 확인

- 「연구·연구비 관리 매뉴얼」 클릭 → 필요 매뉴얼 확인



※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http://gaia.go.kr) 하단

□ 문의처

구분	담당	전화	E-mail
과제 공고, 접수, 평가 관련 문의	연구성과활용본부 기술사업화팀	02-736-9282	sky@compa.re.kr
IRIS (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)	IRIS 콜센터	1877-2041	-

※ IRIS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별 첨 1. 공공연구성과 가치창출 기술키움 사업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(양식)
2. 공공연구성과 가치창출 기술키움 사업 신규과제 별첨자료(양식)
3. IRIS 관련 매뉴얼

참고1 공공연구성과 가치창출 기술키움 사업 세부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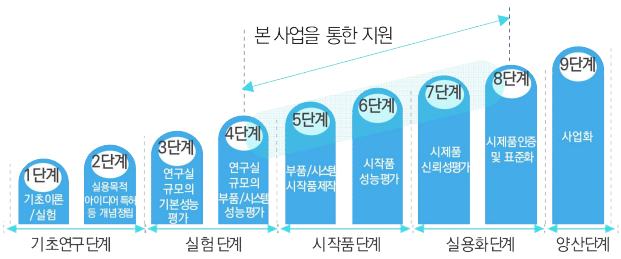
1. 사업 목적 및 필요성

□ (목적) 우수 기초·원천 연구성과를 발굴하고, **다양한 시장 수요에 맞게 동시·병렬적으로 기술고도화·실용화 지원**을 통한 정부R&D 효율성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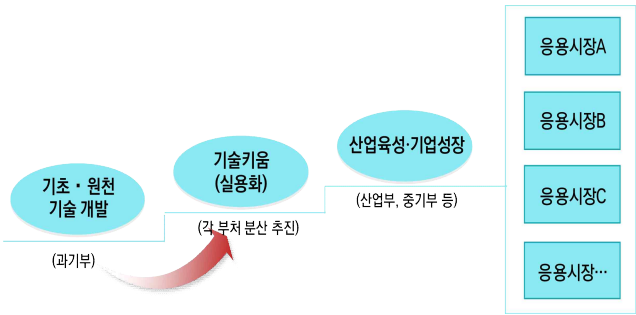
○ 연구자·중개자·기업 3자가 일체화 되어 **기초·원천 기술을 다양한 기술분야로 분화*(연쇄파생)** 하는 기술실용화 추진

- 기초·원천 기술(TRL 3~4)을 후속R&D·시제품 제작·시험/인증·기술이전 등 **기술실용화 종합지원**을 통해 기업이 활용 가능한 수준(TRL7~8)으로 기술키움 추진

* OSMU(One Source Multi Use) : Seed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동시 기술실용화



<지원범위>



<동 사업 영역>

2. 사업 내용

□ 사전기획

○ **(세부지원 내용)** OSMU形 기술실용화 추진이 가능한 기초·원천 우수연구성과 선정을 위한 **실용화 전략 수립 등 사전 타당성 검증**

- 응용분야 발굴 및 목표시장 설정, 컨소시엄 구성(수요기업 매칭) 등
- 기술-제품 포트폴리오 구축, 후속R&D 전략 및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실용화 성공 가능성 사전 검증

○ 사전기획 주요내용

구분		지원 내용
환경 분석	기술동향 분석	- 국내외 산업・기술・시장동향 분석
	기업수요 확인	- 응용분야 발굴 및 수요기업 발굴/매칭
추가 기술 개발/ 실용화 전략 수립	BM 수립	- 응용분야별 BM 수립
	기술개발 계획	- 세부 기술개발 전략(기술개발 목표 및 결과물), 참여기관별 역할분담 및 보유역량,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등
	실용화 계획	- 국내외 시장분석, 목표시장 타겟팅, 수요처 발굴 및 마케팅 전략/계획 수립, 사업화 추진전략/계획 수립
	자금확보 방안	- 개발자금 확보 계획(외부 자금+ 추가 투자계획+민간 투자유치 가능성 등)
	지적재산 전략분석	- 지적재산 확보 전략, 보유 지적재산의 보강 전략, 지적재산권 방어 전략 등
	연구단 운영계획	- 기술키움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단 내 역할분담
경제성 및 파급효과		- 예상 매출액 등 경제적 성과

□ 기술키움

○ (세부지원 내용) 사전기획이 우수한 과제(경쟁형 2:1)에 대해 수요기업(시장)의 요구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술키움(기술성숙) 종합*지원

- 후속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연구는 대학·출연연 등 기술 보유기관 중심으로 추진(1단계), 수요기업 기술이전 후 상용화 연구는 기업주관으로 진행(2단계)

* 기술이전・검증, 후속 R&D(기술성숙), 시제품 제작, 시험・인증 등

□ 추진체계



3. 중점 추진 방향

□ 다양한 혁신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R&D 추진

○ 기술보유자・중개연구자・수요기업・TLO(기술사업화 전문가) 등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**과제기획에서부터** 응용분야 발굴・실용화 전략수립・후속R&D 등 **기술실용화 전주기 협력체계 구축**

• **(기술보유자)** 원천기술 제공 및 1개 응용분야 직접 기술실용화 추진	• **(중개연구자)** 원천기술 기반으로 추가 응용분야 발굴 및 기술개발
• **(수요기업)** 시장요구성능 제시, 상용화 연구, 실용화 추진	• **(TLO 등)** 사업화전략 수립, 기술이전 계약, 투자유치 지원 등

□ **경쟁 방식의 사전기획 강화**를 통해 잠재력 높은 연구단 선정·지원 및 **연구단 內 이어달리기**를 통한 **조기 기술실용화** 추진

○ 다양한 파급·응용분야에 대한 사전 발굴 및 스크리닝, 기술키움을 위한 중개연구자(Gap-filler) 및 수요기업 발굴·선별 등 사전기획 강화

○ 연구단 내 기술개발기관(공공연구기관) 및 수요기업 이어달리기를 통한 연구개발·실용화 동시 지원

- 연구기관 중심으로 기술키움(1단계), 수요기업 주도의 기술실용화(2단계)

□ OSMU形 **기술실용화 추진**을 통한 **새로운 기술실용화 체계 구축**

○ **하나의 기초·원천 연구성과**를 다양한 **목표 시장별 수요**에 맞춰 **동시·병렬적으로 실용화를 추진**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 창출

- 기업 수요기반·기술 자체의 적용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응용분야 발굴 및 실용화 추진

※ 모든 기초·원천 기술은 다중 파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, OSMU形 지원은 특정기술 분야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닌, **'기술의 실용화 지원 방식'**에 적용

- 특정 응용분야에 대한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한 기초·원천 기술의 경우 단일 응용분야로의 집중지원 보다는 포트폴리오형 관리(다수 응용분야 동시지원)를 통한 위험분산 및 단계적 검증 전략 필요

참고2 '23년도 사업 추진 일정(안)

1 사전기획 추진일정(안)

절차	추진내용	일시	주체
사업공고	'23년 공공연구성과 가치창출 기술키움 사업 사업공고	'23.1월	과기정통부
▼			
신청서 접수 및 선정	사업계획서 접수	'23.2월	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
▼			
사업평가	서면 및 발표평가	'23.3월	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
▼			
최종선정	사업추진 위원회 검토·의결	'23.3월	과기정통부
▼			
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	최종선정 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	'23.3월	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
▼			
사업수행	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전기획 수행	'23.3월~6월(3개월)	주관기관
▼			
최종평가	사전기획 최종평가를 통한 기술키움지원 대상 후보 선정	'23.6월	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
▼			
기술키움 지원대상 선정	사업추진 위원회 검토·의결	'23.6월	과기정통부

2 기술키움 지원 추진일정(안)

절차	추진내용	일시	주체
기술키움 지원대상 선정	사업추진 위원회 검토·의결	'23.6월	과기정통부
▼			
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	최종선정 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	'23.7월	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
▼			
사업수행	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	'23.7월~12월	주관기관
▼			
연차점검	1차년도 사업추진 결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평가	'23.12월	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
▼			
2차년도 협약체결 및 연구비지급	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	'24.1월	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

※ 사업 추진 일정은 부처 및 전문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
참고3 공공연구성과 가치창출 기술키움 사업 FAQ

FAQ 목 차

[사업신청 관련] ····· **26**

① '사전기획' 신청 시 이미 컨소시엄이 구성 완료되어있어야 하는지?

② OSMU형 기술키움이 무엇인지?

③ 파생되는 분야의 수 제한은 없는지?

④ 기초연구성과를 보유한 대학이나 출연(연)의 교수·연구자가 창업한 기업도 수요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한지?

[사업지원내용 관련] ····· **26**

① 주관기관, 공동기관, 위탁연구기관의 기관구성, 형태, 연구비 배분은 어떻게 하는지?

② 실용화 지원과제의 역할은 무엇인지?

③ 공동 기술이용 확약서가 무엇인지?

④ 수요기업에서도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?

⑤ 과제별 총 지원 예산 규모는?

[선정평가 관련] ····· **27**

① 기술 분야별로 과제 선정 비율이 있는지?

② 기술이전 확약서는 정확히 어떤 기술에 대한 이전 확약서인지?

③ 발표평가는 반드시 연구책임자가 발표해야 하는지?

[기타 사항] ····· **28**

① 수요기업이 참여하는데 민간 부담금 어떻게 되는지?

② 1단계 기간내에 반드시 기술이전을 해야 하는 것인지?

③ 수요기업의 기술이전 확약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?

④ 수요기업의 기술이전 확약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?

□ 사업신청 관련

Q	① ‘사전기획’ 신청 시 이미 컨소시엄이 구성 완료되어있어야 하는지?
A	▶ ‘사전기획’ 지원내용 중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구성이 완료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 가능 ▶ 단,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계획이 연구계획서 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 ▶ 공고문 3~4 페이지 참고

Q	② OSMU형 기술키움이 무엇인지?
A	▶ 하나의 원천기술 혹은 원천기술군이 다수의 분야로 확장이 가능한 경우 추가 연구개발을 통해 서로 다른 수요기업(시장)이 원하는 수준까지 견인해 기술이전 및 상용화를 추진하는 기술사업화 방식입니다. ▶ 공고문 1~3 페이지 참고

Q	③ 파생되는 분야의 수 제한은 없는지?
A	▶ 파생분야, 수는 제한이 없으며 최소 2개 이상의 분야로 파생 가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 ▶ 공고문 4페이지 참고

Q	④ 기초연구성과를 보유한 대학이나 출연(연)의 교수·연구자가 창업한 기업도 수요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한지?
A	▶ 네. 수요기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. ▶ 공고문 6 페이지 참고

□ 사업지원 내용 관련

Q	① 주관기관, 공동기관, 위탁연구기관의 기관구성, 형태, 연구비 배분은 어떻게 하는지?
A	▶ 주관기관, 공동기관 등의 연구비 예산 배분은 총괄 연구책임자가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합니다. ▶ 다만,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법·규정 등의 기본 자격을 준수해야 하는 등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 ▶ 공고문 3~9 페이지 참고

Q	② 실용화 지원과제의 역할은 무엇인지?
A	▶ 실용화 지원과제는 총괄주관기관 내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에서 수행하며, 연구단 내 모든 세부과제 대상으로 기술이전, 상용화, 시장발굴, 투자유치 등 기술사업화 전반에 걸친 지원업무를 수행합니다. 또한 연구단 내 성과관리, 전문기관 협약 등 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도 함께 수행합니다. ▶ 공고문 4 페이지 참고

Q	③ 공동 기술이용 확약서가 무엇인지?
A	▶ 세부과제 구성기관이 원천기술을 보유한 총괄주관기관과 다른 경우 기술키움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원천기술을 활용해 발생한 추가 IP 활용과 관련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는데 기술료배분, 기술개발 지분문제 등 권리관계를 사전에 정의하기 위한 세부과제 기관간 체결 문서입니다. ▶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되, 추가 IP 권리관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 ▶ 공고문 6~7 페이지 및 참고1 참고

Q	④ 수요기업에서도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?
A	▶ 1단계(2년) 사업기간 중 필요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. ▶ 2단계(2년) 사업기간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, 이에 따라 법·규정에서 정하는 민간부담금도 부담해야 합니다. ▶ 공고문 1, 4, 7 페이지 참고

Q	⑤ 과제별 총 지원 예산 규모는?
A	▶ 본 사업은 1단계 2년 + 2단계 1년으로 구성된 사업으로, ▶ 1개 과제당 총 3년간 54억원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됩니다. (18억원/1개과제/12개월, '23년도는 6개월('23.7~12월)로 9억원 지원) ▶ '23년도는 총 2개 기술키움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고, 1단계(2년) 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예정입니다. ▶ 공고문 1~3 페이지 참고

□ 선정평가 관련

Q	① 기술 분야별로 과제 선정 비율이 있는지?
A	▶ 기술 분야별 과제 선정 비율은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.

Q	② 기술이전 확약서는 정확히 어떤 기술에 대한 이전 확약서인지?
A	▶ 기술키움 1단계에서 연구자 주도로 개발된 기술 즉, 원천기술에서 파생된 추가 연구개발 결과물의 이전 확약서입니다. ▶ 1단계 종료 후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필수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사전기획 단계에서 해당기술에 대한 기술이전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▶ 공고문 2~4 페이지 참고

Q	③ 발표평가는 반드시 연구책임자가 발표해야 하는지?
A	▶ 발표평가는 연구책임자 발표가 원칙입니다. ▶ 다만, 발표평가 전 피치못할 사정(코로나 확진 등)이 있는 경우, 반드시 전문기관과 사전 연락 후 승인(공문)할 경우 다른 연구자가 발표 가능합니다. ▶ 공고문 14 페이지 참고

□ 기타 사항

Q	① 수요기업이 참여하는데 민간 부담금 어떻게 되는지?
A	▶ 본 사업은 1단계 2년 + 2단계 1년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▶ 1단계 기간 중 수요기업은 별도의 민간 부담금을 매칭하지 않고, 2단계 기간부터 법·규정에 따라 민간 부담금이 매칭됩니다. ▶ 공고문 1, 4, 6 페이지 참고

Q	② 1단계 기간내에 반드시 기술이전을 해야 하는 것인지?
A	▶ 기술이전 시기는 연구책임자가 수요기업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셔서 기술이전 하시면 되겠습니다. ▶ 아울러, 수요기업에서 제출한 '기술이전 확약서' 상의 기술이전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. ▶ 기술이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원은 불가합니다.

Q	③ 수요기업의 기술이전 확약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?
A	▶ 수요기업에서 제출한 '기술이전 확약서'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. ▶ 만약, 이행되지 않을 경우, 중간점검, 평가(단계) 결과 및 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구목표 및 내용 조정, 연구비 증감, 지원중단, 조기종료 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. ▶ 공고문 4, 11 페이지 참고